

제 1 조 적용 범위

본 공급 및 지급에 관한 일반조건(“본 일반조건”)은 개개의 매매거래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거래에 모든 거래에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매수인이 본 일반조건과 별개로 제시하는 구매조건은 매도인이 서면으로 이에 동의하지 않는 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주문을 수락하거나 제품을 인도하는 것은 매수인이 제시하는 구매조건에 대한 매도인의 동의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본 일반조건은 개인 소비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2 조 계약 체결; 제품 특정

매도인의 제안은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계약은 매도인의 주문 확인서를 통해서만 체결되며, 계약 조건은 주문 확인서를 통하여 결정된다. 매도인이 주문 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은 매도인이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도인이 제품에 관하여 제공하는 설명 및 견본은 개략적인 예시에 불과하므로 확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된다. 매도인은 정기적인 제품 업데이트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기술적 변경사항 등을 비롯하여 제품을 인도하기 전까지 제품에 변경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한다. 단, 그러한 변경이 매수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지는 아니된다.

제 3 조 취소 및 반품의 제한

기 체결된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의 명시적인 동의가 요구된다. 인도받은 제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요구된다.

제 4 조 위험 이전; 운송

인도는 운송비 및 보험료 인도조건 (CIP)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제품은 운송업자에게 인도하는 즉시, 늦어도 공장 또는 창고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도인은 어떠한 경우(제품을 해외로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함)라도 운송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제품이 운송 중 손상 또는 분실되는 경우, 매수인은 즉시 운송업자에게 당해 상황에 대한 보고서와 작성하도록 한다.

매수인이 서면으로 달리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한, 매도인은 운송방법, 운송경로 및 운송보험 등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가장 신속하거나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야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5 조 분할 선적

매도인은 주문된 제품을 분할 선적할 수 있다. 분할 선적된 주문은 독립적인 인도 권리로 간주되며, 대금은 제8조에 기재된 지급 기한 내에 개별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분할 선적된 주문의 대금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매도인은 나머지 분량의 인도를 중지할 수 있다.

제 6 조 인도 기간

인도 기간에 대한 기재사항(주문 확인서에 포함된 경우를 포함함)은 매도인이 달리 명시하여 정하지 않은 한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인도 기간은 매도인의 주문 확인서 작성일에 개시된다. 단, 주문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이 확인되고, 특히 매수인이 필요한 모든 문서, 허가 및 증서를 제공하고, 약정된 계약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는 인도 기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인도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제품이 선적되거나 선적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통지가 이루어지면 인도 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품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인도일은 불가항력적 사유의 존속 기간에 적절한 조업 재개 기간을 더한 만큼 자동적으로 연기된다. 납품업체의 공급 지연, 노동쟁의, 정부당국의 조치, 원료나 에너지 부족, 공장 및 운송 중단 등 제품 인도를 부당하게 어렵게 만들거나 불가능하게 만드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불가항력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상황이 4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를 추후에 이행하거나 매도인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품을 인도할지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도인이 구속력 없는 인도 기한을 초과한 데 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매수인이 최소 30일간의 추가 인도 기간을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과도 없이 동 기간이 도과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매수인은 동 기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미이행 선적가격의 5%의 범위에서, 그리고 예측가능한 일반적인 손해의 범위로 제한된다.

제 7 조 가격

매수인은 인도일 당시의 고시가격을 지급한다. 이와 달리 고정가격에 합의한 경우라도, 매도인은 인도일 당시의 고시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 가격이 약정가격보다 7% 이상 인상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가격 인상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가격은 운송비 및 보험료 인도조건이며 원화로 표시한다. 가격은 매도인이 산정하는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산정한 수량 또는 중량이 부정확함을 입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제 8 조 지급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이 발행하는 모든 청구서는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지급액은 청구일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결제 대금으로 충당된다. 매도인은 환이음을 영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단, 매도인은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현금 또는 이체 외의 지급 방식을 수락할 수 있다.

매도인은 대금 결제에 따른 어떠한 수수료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은행 수수료, 할인료 및 추심비는 매수인이 부담하며, 그와 같은 취지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라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지급기한이 만료되는 경우, 매도인은 청구서 또는 이와 유사한 지급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31일째 되는 날로부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8%를 가산한 이자율로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계약 체결 이후 매수인의 재정 상태가 중대하게 악화되거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었음을 계약 체결 이후에 알게 된 경우, 매도인은 매도인이 회망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하거나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합리적인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계약 이행을 보류할 권리를 지닌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익을 제기한 채권으로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은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으며, 그러한 반대 채권을

근거로 하는 유보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금 지급은 서면으로 대금을 수령할 권한을 부여받은 매도인의 대리인들 또는 직원들에게 행해진 경우에만 유효하다.

제 9 조 특별 생산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건 및 사양 등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러한 요건 및 사양의 정확성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매수인은 산업재산권 또는 저작권에 기하여 매도인 또는 매도인의 하수공업체를 상대로 제기되는 모든 청구로부터 매도인을 면책하여야 한다.

주문에 따라 생산된 제품의 인도수량과 계약수량간의 차이가 ±10% 이내인 경우 계약과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매매대금은 그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위 주문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합의한다.

제 10 조 소유권 유보

인도된 제품들은 매수인이 현재 및 장래에 청구하는 모든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까지 매도인의 자산으로 존속한다.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중단하고 있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제품을 통상적인 사업 과정에서 조립 및 판매할 수 있다. 매수인은 제품에 대하여 질권이나 기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제품을 매수인이 판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모든 청구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판매에 따른 부수적인 권리, 담보권 및 소유권 등 판매로 인하여 고객에 대하여 가지게 된 자신의 모든 권리를 매도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된다. 단,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불이행하거나 중단하고 있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양도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제품 및 매도인에게 부여된 모든 담보권의 가액이 매수인에 대한 매도인의 채권액을 20%를 넘어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초과금액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권을 해소한다.

수출 거래의 경우로서 소유권 유보 또는 권리 양도를 유효하게 하기 위하여 제품 도착지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당해 사실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당 도착지에서 소유권 유보 또는 상기의 기타 권리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 매수인은 인도된 제품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가장 근접한 담보권이나 기타 적절한 담보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제품공급 매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외상거래 한도의 100%에 상응하는 통상적인 담보(부동산근저당, 보증보험증권 등)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1 조 하자

매도인은 매수인이 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늦어도 제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만 제품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 매도인은 위 기간 내에 통지되지 않은 하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품 하자에 대한 매도인의 책임은 하자를 제거하거나 하자있는 제품을 무상으로 교환하여 주는 범위로 제한된다. 하자 있는 제품 또는 당해 제품의 견본은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매도인에게 우선적으로 전달되어 검사될 수 있도록 한다.

하자가 없는 대체품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매도인이 이행을 거부하거나, (양 당사자들의 상호 이익을 고려한 이후) 법적 구제수단을 즉각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된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인이 정한 하자 개선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한이 성과 없이 만료되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가격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과 관련된 매수인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동 기간은 제품 인도일로부터 개시된다.

제 12 조 손해배상청구

그의 손해, 주된 급부의무의 침해, 구매에 따른 위험 수용이나 보증 청구에 더하거나,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매도인의 책임이 인정되거나, 인명손실, 인체상해, 건강상의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의무위반, 불법행위 또는 기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본 계약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는 예견 가능한 통상의 손해로 제한된다.

매도인이 상기 조항에 따라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 매도인의 직원, 대리인 및 고용인도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제한적인 책임을 진다.

제 13 조 준거법, 재판지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법률 관례는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규율된다. 본 공급 및 지급 조건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전속적 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해결된다. 매도인은 선택적으로, 매수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 소재지에서 소를 제기할 권한이 있다.